

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	738
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9. 1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'98. 10. 12일 직제개편 명청에 맞도록 개정.
- 자문대상사업을 "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"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공법등이 없는 단순 소형공사, 일반소형건축공사등 대부분의 공사가 자문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빈번한 위원회 개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상향조정하고자 함.
- 설계변경자문대상을 증·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 자문내용이 아닌 단순물량증감, 물가상승금액적용등의 설계변경도 자문대상에 해당되므로 불합리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.
- 또한 용역설계에 대한 설계자문 횟수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 규정에 의한 예외조항을 적용않고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착수, 중간, 마무리에 걸쳐 반드시 3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
- '98. 8월 이후 5회(9건)에 걸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합리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·개선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□ 주 요 골 자

-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“투자심사계장”에서 “투자경영 담당주사”로, 서기를 “투자심사계 소속”에서 “투자경영 담당자 중”으로 개정하고자 함(안 제5조2항)
- 지금까지는 설계자문대상을 “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”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“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”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성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
- 지금까지는 설계변경자문대상을 “설계변경 중·감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”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설계변경 금액과는 관계없이 “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”로 자문대상을 변경하고자 함 (안 제6조제3항)
- 지금까지는 설계자문 시기를 공사규모등과 관계없이 착수, 중간, 마무리에 걸쳐 3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“100억원 미만의 용역설계는 마무리단계, 100억원 이상의 용역설계는 착수 또는 중간단계, 마무리 단계에 걸쳐 2회이상을 자문반도록 개정하고자 함 (안 제8조제1항)

□ 개 정 안 : 불 임

관계법령 발췌 :

○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

- ④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착수단계·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에 걸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예산수반사항 : 없 음

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기타 : 없 음

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

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5조 제2항 중 “투자심사계장이” 를 “투자경영담당주사가”로 하고, “투자심사계 소속” 을 “투자경영담당자 중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10억원”을 “30억원”으로 하고 제2항 중 “10억원”을 “30억원”으로 하며, 제3항 중 “설계변경이 1억이상인 건설공사와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”를 “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”로 한다.

제8조 제1항 중 “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자문 신청서와 착수단계, 중간단계, 마무리 단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” 을 “자문요청은 착수, 중간, 마무리 3단계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예정공사 금액이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설계용역은 마무리단계, 100억원 이상의 설계 용역은 착수 또는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 등 2회이상 자문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할 때에는 설계자문 신청서와 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간사 및 서기)① (생 략)</p> <p>(2)간사는 투자심사계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계 소속 7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</p>	<p>제5조(간사 및 서기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 - 투자경영담당주사가 - - - - 투자경영담당자 중 - - - - -</p>
<p>제6조(위원회 자문대상공사) 위원회의 설계 자문 대상공사는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산시 및 안산시가 납입자본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 사비(관급자재를 포함한 총 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·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)를 말한다. 이하같다)가 <u>10억 이상인 건설공사</u> 2. 총공사비가 <u>10억원</u> 이상인 건설공사로 서 안산시가 승인·인가 또는 허가한 당해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.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<u>설계변경금 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와 기본적 인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</u>. 4. (생 략) 	<p>제6조(위원회 자문대상공사)</p> <p>1.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<u>30억</u> - - - - -</p> <p>2. - - - <u>30억원</u>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3. - - - - -</p> <p>- - - - - <u>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</u>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자문요청)①자문을 요청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자문 신청서와 착 수단계, 중간단계, 마무리 단계에서 자문 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, 현황조사, 지 질조사, 구조계산서, 설계도, 설계보고서와 공사설명서(별지 제3호서식) 및 각 부문별 (토목,건축,기계,전기 등) 설계 검토 보고서 를 첨부하여 체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⑤ (생 략)</p>	<p>제8조(자문요청)①자문요청은 착수, 중간 마무리 3단계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예정 공사 금액이 3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의 설계용역은 마무리단계, 100억원 이상의 설계용역은 착수 또는 중간단계 및 마무 리단계 등 2회 이상 자문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할 때에는 설계자문 신청서와 - - - - -</p> <p>(2) ~ (5) (현행과 같음)</p>